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제05호 / '17.5.26(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아프면 맘편히 병원 좀 갑시다

1차 제시안 논의할만한 수준도 안돼

7차 교섭에서 첫 제시안 나왔다

25일(목) 충주 KDK에서 7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지난주 6차 교섭이 사측의 성원부족으로 결렬된 상황이라 지부 교섭위원들은 이번 7차 교섭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사측도 1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형편 없는 내용으로 김빠지게 만들었다. 1차 제시안이라 만족할만한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논의할만한 것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교섭은 진전없이 끝났다.

아플때 병원은 맘편히 갈 수 있어야

올해 지부는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해 병원 진료를 위해 조퇴할 경우 임금공제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1차 제시안에서 '제시안 없음'으로 일축했다. 조합원이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일이다. 더군다나 감기만 걸려도 주변 동료들에게 옮길 수 있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위해서도 좋다. 그런데 현실은 조퇴만 해도 임금이 공제되는 바람에 웬만하면 참고 일한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변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사측은 2차 제시안에서

는 분명히 전향적인 내용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사측은 공민권 행사 보장을 위한 요구안에도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빼놓았다.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에 출두해야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국회, 법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국회에 출석할 일은 거의 없다. 법원 출석의 경우도 증인, 참고인일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하니, 법률 소송으로 피고, 원고가 됐을 때는 의미가 없다. 증인, 참고인은 제3자의 입장이지만, 피고나 원고라면 당사자의 일이다. 그런데 제3자로 출석할 때는 근무로 인정하고 본인의 일로 법원에 출석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맹이는 쏙 빠진 제시안이다.

진전된 2차 제시안 기대한다

다음 주면 벌써 6월이다. 날씨도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고 교섭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어야 할 시기다. 1차 제시안은 논의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사측은 2차 제시안은 진전된 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서 차기 교섭부터는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7차 교섭 속기록

차기 교섭에서는 진전된 안 나와야

사 : 올해는 노동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사의 상황에 따라서 노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노사 만족할 수 있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

노 : 사측 제시안 있나?

<1차 제시안 제출>

<정화>

노 : 1차 제시안이라서 만족할만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안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것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사 : 다음주 화요일에 모여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 다음 교섭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노 : 일단 제출된 안은 우선 받는 것으로 하겠다. 그동안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었다. 차기 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사회 : 차기 교섭은 6월 2일 15시 한온시스템에서 진행하겠다.

[1차 제시안]

1. 2017년 임금인상

○ 추후제시

2.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안

○ 제시안 없음

3.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ㄱ) 병역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ㄴ) 국회, 법원에 공적인 사유로 증인, 참고인으로 출두할 때

(ㄷ)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에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ㄹ) 천재, 지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단,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함.

② 제시안 없음

③ 병역법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